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민*, 선준호*,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A Study on Improving Private Investigation Work Efficiency to Missing Cases

Kim Sang Min*, Sun Jun Ho*, Yeom Keon Ryeong**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riminolog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주제어 실종사건, 탐정 산업, 실종사건 조사 전략, 최신 기술, 법률 규제

Abstract In investigating missing persons cases, the focus is on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detectives' work in investigating missing persons cases. Disappearance cases are seen as a problem that directly affects social safety and individual well-being. The research has the following structure. The introduction presents the necessity,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Next, we analyze the definition, causes, types and actual conditions of disappearance cases. In terms of problems in the process of handling missing persons cases,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problems in the response of related agencies after reporting, problems due to the prolongation of the case, and problems due to legal restrictions are analyzed. In the plan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detectives for disappearance cases,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nvestigation networks, strengthening of capacity related to disappearance case investigation, professional public interest detective cert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exception provisions for detective activitie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we present what is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public interest detectives specializing in missing persons cases.

Key Words Missing cas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Missing case investigation strategy, Latest technology, Legal regulation

Received 27 Sep 2023 Revised 13 Oct 2023
Accepted 18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Yeom Keon Ryeo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kicl200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실종사건은 사회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실종자 및 사건관계인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받는 정신적 피해 및 충격이 엄청나다.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실종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모호한 상실감’을 경험한다(Boss, 2006)[1].

실종이 길어지게 되면 실종자의 가족 구성원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생계를 버리고 실종자 찾기에 몰두하게 되며 실종자 가족의 경제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정익중·김성천·송재석, 2009)[2].

요즈음, 실종사건 및 장기 미제실종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 종종 보인다. 경찰에 대한 불신, 가족 구성원의 부주의 및 무책임에 대한 비판, 근거 없는 의심 등 2차 가해를 보이는 반응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분위기의 확산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막연한 불신, 가족 구성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증가 등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듯 실종은 실종자 가족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어둡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종사건 수사는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사건 발생 장소, 피해자의 상태, 관련자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탐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실종사건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탐정이 어떻게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며, 사건 해결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실종사건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 국내에서 실종사건의 정의와 유형 및 원인에 대하여 논의한다. 두 번째 ‘실종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과정의 문제점, 대응과정, 사건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적·제도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세 번째 ‘탐정의 보완적 방안 분석’에서는 탐정의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전문조사 인증제도, 탐정 활용에 대한 조사비용 지원제도, 법적·제도적 예외규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며 결론을 도출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실종사건 조사과정에서 탐정의 효율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종사건 해결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선행연구분석과 자료분석, 실종사건 전문 탐정(5명)과의 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실종사건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

2.1 실종사건의 정의

우선 종적을 잃어간 곳이나 생사(生死)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전적 의미의 실종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3] 현행법상 ‘실종자’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실종자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자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입법 당시에는 실종아동을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14세 이상 청소년의 가출 및 실종에는 수색, 수사, 위치정보 이용 등에 제한이 있었으나 2021년 6월 9일부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실종 대상자의 기준이 확대되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 1항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다.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로의 치매 환자로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되

어 있다.

또한, 경찰청 예규 제582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서도 실종자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다. 경찰청 예규 제582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서는 “실종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찾는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장기실종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자로 분류되는 청소년, 지적장애인, 치매 질환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적극적인 수색, 수사를 위한 지문, 위치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성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실종 성인에 대한 수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2.2 실종사건의 원인

실종사건의 원인은 다양한 발생원인이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출생 미신고부터 가정의 불화, 한부모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치 및 살해,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성매매 및 성범죄에 이용, 노인과 치매환자 등이 길을 잃어 행불자가 되는 등의 발생원인이 존재한다.

2.3 실종사건의 유형 및 실태

2.3.1 실종사건의 유형

실종사건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가출인 사건, 미아 사건, 이유 없는 실종사건이 해당한다. 실종사건의 3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에서는 가출사건, 미아사건, 이유 없는 실종사건의 3대 영역으로 실종사건을 영역 분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납치나 감금, 유괴, 대인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실종사건은 별도의 강력범죄 관련 실종사건으로 영역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이 이와 같은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실종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00년

도부터이며, 이후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1〉 실종사건의 3가지 영역

실종영역	정의
가출사건	자신이 사는 집이나 주거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출을 실행한 다음에 그 종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아사건	아동을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종적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불명상태
이유 없는 실종사건	가출자가 아님에도 일정 시점부터 그 종적이나 생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3.2 실종사건 실태

2023년 05월 25일 경찰청(2023)과 보건복지부(2023)에 따르면 26,416건이 실종사건으로 접수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매해 2만여 건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2년 실종된 아동 중 27명은 2023년 04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실종된 상태이다[4][5].

〈표 2〉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 접수 현황

연도	실종신고 접수건수(단위 : 명)
2018년	21,980명
2019년	21,551명
2020년	19,146명
2021년	21,379명
2022년	26,416명

<출처> 경찰청 발표자료(2023.05.25.)

〈표 3〉 18세 미만 실종아동 미해제 현황

연도	실종신고 미해제(단위 : 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27건

<출처> 경찰청 발표자료(2023.05.25.) 미해제 기준 : 2023.04.30.

〈표 4〉 성인 실종신고 건수

연도	실종신고 건수
2017년	65,830건
2018년	75,592건
2019년	75,432건
2020년	67,612건
2021년	66,259건

<출처> 경찰통계연보, 2022.

경찰통계연보(2022)를 보면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는 2017년 6만5830건, 2018년 7만5592건, 2019년 7만5432건으로 매년 7만 건 여건에 달한다. 꾸준히 매년 6~7만 건 사이의 성인실종 사건이 경찰청에 신고,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6].

3.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

3.1 실종사건 초기 대응과정의 문제점

미아, 가출인, 실종사건의 발생시 실종자의 가족이나 관계인들은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인근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경찰에 의한 실종자 찾기가 개시된다.

아동의 경우 신속하게 ‘앰버 경고(Amber Alert)’를 발령하며, 인근 경찰관서의 가용 경력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재난관련 긴급문자 서비스에 등록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근 지역에 있는 핸드폰 사용자들에게 실종된 아동을 찾는 긴급문자가 발송된다.

문제는 초기대응 시에 아동이나 가출인,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실종된 장소로부터 실종자가 빠르게 이동할 경우에는 좀처럼 해당 실종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종자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면서 경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남재성, 2015)[7].

실종사건이 납치나 인질, 보복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수사인력을 투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실종자 찾기를 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 운영중인 실정이다(김상호·이웅혁, 2008)[8].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찰출동 요청으로 인해 사건 초기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찰인력의 제한성이 존재하며,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아동, 노인 등의 실종자를 찾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이하섭, 2013)[9].

아울러 다수의 경찰인원이 투입되는 수색과정에서 오인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종자가 감정적, 정신적, 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이건수·곽대경, 2015)[10].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종자 가족이나 관계인 입장에서 초기대응의 미숙함이나 투입가능 가용자원의 부족은 답답한 상황으로 이어지며, 24시간 이내에 실종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 실종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박종철·장일식, 2018)[11]. 물론, 이를 담당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경찰자원(Police Resource)의 투입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 치안여건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대적인 자원 투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경비업체나 소방관련 기관, 지역사회 자원봉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된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을 찾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지역관리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상황 하에서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지역사회(Community) 중심의 지방행정이 아닌 관리형 지방행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을 가진 지역사회 봉사자원의 활용이 쉽지 않다(최원태, 2007)[12].

3.2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실종자가 발생한 이후에 관련기관의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지적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육안(肉眼)으로 사람을 찾는 방법 이외에는 실종자의 동선이나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실종자를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전자추적장치를 아동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에 부착하는 시스템적인 제안도 있었지만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정명숙, 2012)[13].

일반적으로, 3, 6, 9, 12, 24시간이 단계적으로 경과하면서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매 단계에서 50%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만큼 초기에 실종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정익중 외, 2018)[14]. 실종자 신고 이후에 이를 전담하는 경찰은 단순실종인지, 자발적 가출인지, 납치나 유괴 등의 강력범죄인지에 대한 사안 구분에 시간을 지체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수색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찰이 실종사건을 단순한 가출사건으로 구분하면, 이 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시작하며, 신고자 또는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에 대해 원하는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실종자의 관계인이나 가족 등은 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기댐 현상을 보이며, 단순한 가출이라 하더라도 실종자를 빠르게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하여 찾아줄 것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이강문, 2018)[15].

지역경찰의 대응이나 태도 역시도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데, 실종자가 일정 시간이 되면 알아서 귀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단순가출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없다는 식의 표현을 실종자 관계인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적극적인 자세와 경청의 태도를 통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지역경찰관(Community Police)도 많지만 대응방식의 잘못으로 인해 실종자 가족이나 관계인으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거나 언론의 취재를 통해 질타를 받는 사례도 많다(이건수, 2019)[16].

3.3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실종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부분은 장기화이다. 장기실종사건으로 경찰에서는 명명하여 부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생존반응에 대한 수사와 행적이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가출, 미아, 실종사건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익탐정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2023.01.25.~02.25.)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표 5〉 실종사건 전문탐정의 출신과 경력(응답자 5명)

실종사건조사 전문탐정	출신	활동경력
탐정 A	전직 경찰수사관	3년
탐정 B	전직 경찰수사관	2년
탐정 C	민간탐정	5년
탐정 D	민간탐정	8년
탐정 E	시민단체대표	25년

3.3.1 현실적으로 높은 사망 가능성

첫째, 실종사건의 장기화는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종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실종자가 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찾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종자를 이룬 시간 안에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종자가 범죄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권자영·박향경, 2015)[17].

“장기적인 실종사건을 가족 등의 의뢰인으로부터 맡게 되면, 조사과정에서 실종자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사망으로 불만한 추정적 자료나 내용들이 많지만, 명확하게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이나 의뢰인들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기는 하지만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본인들도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공익탐정 A)”

3.3.2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과 해체 문제

다른 문제점으로서 가족의 장기 실종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 발생을 들 수 있다. 가족구성원 일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자구적 활동을 벌이며, 다른 가족구성원은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종된 가족을 찾고자 하는 가족구성원과 생업을 지속하면서 경찰이나 관련 공공기관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가족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

어린 자녀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어머니 쪽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자녀를 찾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아버지 쪽에서는 생업을 지속하면서 자녀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극단적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 등의 부수적인 문제로까지 진행된다(김종우·김정우, 2013)[18].

“자녀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붕괴되거나 직전인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부부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탐정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실종된 자녀를 찾기를 애절하게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기도 합니다.(공익탐정 C)”

“실종된 가족을 직접 찾기 위해 나서는 가족들을 보면, 이미 구성원 상호 간에 심각한 갈등의 골이나 감정의 격양됨을 자주 확인합니다. 실종과정에서 실수를 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원망을 하거나 실종된 가족을 찾는데 소극적인 태도나 경찰 등의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가족구성원을 미워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종된 가족도 가족이지만 남아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거움을 느낍니다.(공익탐정 D)”

3.3.3 가족과 관계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발생

실종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실종자의 가족과 관계인들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족이나 관계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와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Bonny et. al., 2016)[19].

실종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5명의 전문

탐정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응답자들이 실종자 관련인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고통과 어려움,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표 6〉 실종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

실종사건조사 전문탐정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족의 문제점
탐정 A	가족간의 갈등, 심리적인 공황상태와 자살충동, 대인기비
탐정 B	가족간의 갈등, 이혼이나 별거 등의 문제, 사건책임 가족구성원에 대한 비난
탐정 C	종교적 맹신의 발생, 심리적 공황상태, 가족간의 심각한 갈등
탐정 D	언론기관과 공공기관에 상습적인 민원제기,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탐정 E	심리적 공황과 자폐적 경향, 사회적 불신,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심각한 갈등

3.4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실제 현장에서 탐정이 실종자에 대한 추적과 조사과정을 진행하려 해도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사항이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종사건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자료열람이 차단되고 있는데, 가족이나 실종자의 관계인이 청구해도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을 공개함으로 인해 탐정이 처음부터 재조사 수준의 조사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사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탐정이 처벌되거나 법률적으로 실체진실에 접근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헌법(憲法)에 개인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차단되는 상황인데, 정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적 가족관계인 자에 의해 실종자에 대한 추적과 조사를 진행하는 탐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률적인 제한을 풀어주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탐정들과 사회구성원, 실종자 가족이나 관계인의 의

견 취합이 필요하다.

4.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4.1 탐정의 공익적 조사네트워크 활성화

탐정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공익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아 민간탐정자격을 발급하는 협회 및 기관은 1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탐정자격의 발급과 교육과 관련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탐정산업의 혼탁과 총합적인 업무네트워크의 구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즈니스 차원의 개별성은 인정하더라도 가출인이나 실종자, 미아,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문제나 범죄행위 등에 대한 감시조사활동을 하는 탐정의 경우에는 전국적 네트워크와 국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탐정 연합체의 구축이나 장기실종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탐정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탐정 선진국들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탐정이나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응하는 탐정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종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실종자를 찾지 위한 방법의 공유, 제보에 대한 검증과정의 공유 등을 위해 실종자 찾기 전문탐정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협회나 학계, 탐정조합이나 연합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4.2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 강화

4.2.1 실종사건 조사전문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시행

실종자를 찾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전문성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탐정조사

분야이다. 탐정자격과정을 이수하고 민간탐정자격을 보유했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적, 기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탐정협회나 탐정교육기관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적 과목으로서 ‘미아 가출인 찾기’ 또는 ‘실종자 조사의 이해’, ‘실종자 조사기법’ 등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탐정법학’, ‘범죄심리학과 범죄학’, ‘조사실무’ 등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실종자 조사에 대한 집중적 교육과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향후 매년 7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종자에 대한 탐정의 추적 및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전문적 교육과정의 개설이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절실하다. 공익적으로 실종자를 추적하는 탐정업자들이 관련 교재나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교과서화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학 및 학계의 협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4.2.2 실종사건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도입

의사의 경우 전문의 자격과정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자격부여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를 따른 또 하나의 전문 직역(職域)으로서 변호사 집단을 들 수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관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역시도 2022년도를 기준으로 3만 명이 넘는 자격취득자가 나온 상태에서 이는 실종자 조사와 같은 전문 조사영역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실종자 수색 및 조사전문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자격 인증제도나 고급자격 부여제도를 시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탐정의 조사영역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전문조사탐정, 법률사건 조사전문탐정, 환경문제 전문조사탐정, 사이버언론 조사전문탐정, 반려동물 전문탐정, 인권전문탐정 등이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조사기술을 가진 탐정들이 개척한 전문영역으로 볼 수 있다.

실종사건 추적 및 조사 역시도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탐정교육과정 및 전문가적 인증제도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고안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4.3 실종사건 탐정공익조사 업무에 대한 공공지원제도 활성화

실종사건의 실종자에 대한 연구를 일찍부터 시행한 유럽의 국가들은 실종자가 처한 사회적, 가정적 환경이 평균 중산층에 비해 열악하다는 연구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발생한 1,724명의 실종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Butorac et al., 2016)[20].

다른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문제나 개인이 처한 환경이 장기실종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Butorac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장기실종 사건의 10% 가량이 가족 내 문제로 인한 갈등 회피성의 자발적 장기실종 사건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실종자에 대한 탐정의 조사과정에서 최소한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심할 경우에는 건당 1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조사연구 결과가 있었다(Fyfe et al., 2015)[21].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은 장기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개입과 조사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만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탐정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이를 본다면 국가나 정부가 일정 부분 이를 보조하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Greene & Pakes, 2013)[22]. 물론, 국가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 찾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도 분명히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지원 차원에서라도 선별적으로 탐정의 활동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4.4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생활보호법 등의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에 서는 정보원, 탐정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었으나, 2021년 8월 5일부로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의 개정을 통하여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사건에 탐정의 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생활보호법 등의 탐정활동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한다. 탐정의 경우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소재파악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조사, SNS(Social Network Service) 조사 등을 통하여 얻어낸 개인정보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탐정의 실종자 조사업무는 항상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생활보호법 등의 위험에서 노출되어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형사처벌, 민사상손해배상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당연히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지만 공익의 목적이 강한 실종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탐정에게는 예외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얻어낸 정보는 유출 및 침해를 하지 않고 실종자 조사에 관해서만 사용해야한다. 탐정업법 입법과정에서 공익의 목적을 띤 업무 등 특히, 실종사건 조사에 관하여 예외조항을 만들어 제정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를 참고하여 탐정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등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생활보호법 등에 관련한 교육 및 실종자 조사업무를 하는 탐정들에 관하여 경찰청 및 탐정협회 등에서 주기적인 윤리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한 바와 같이 실종사건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21세기 IT기술 최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많은 실종자들이 불상의 원인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사회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전국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장기간의 실종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쉬운 대상이 아닐 것이며, 이와 같은 장기 실종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미제 실종사건 수사팀을 각 지방경찰청에 만들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 모든 장기실종사건에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급증하는 치안수요와 고소고발사건의 급증으로 인해 전문수사인력을 실종사건에만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0년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하여 자유신고업종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탐정업의 공익적 방향성의 한 내용으로 실종사건 조사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탐정시장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활동(Profit-Oriented Operation)하는 탐정업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방향을 전환시켜 공익적 차원에서 장기 가출이나 미아, 실종사건 등에 투입하는 사회적인 의견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탐정업 시장이 2030년도 이후에는 해외로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탐정이 가지는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일 것이다. 과거 ‘불법심부름센터’, ‘불법채권추심’, ‘불법용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기 실종사건에 자발적으로 투입되는 공익적 성격의 탐정(공공탐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탐정의 심리적 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의뢰인의 심리적 지원, 그리고 성실성을 기반으로 실종자 가족이나 관계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종사건이나 가출사건, 미아사건만을 전담하는 탐정업자나 탐정법인에 대해서는 공익탐정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실종사건 전문조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체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정의 교육과정에서 공익탐정활동의 영역을 강화하고, 이들이 법률적인 제한선으로 인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법률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가출이라 하더라도 장기화되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바라보아야 하며, 가족해체가 심각해지는 현재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족구성을 유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중시축으로서 공익탐정활동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References

- [1] Pauline Boss(2006). Loss, Trauma, and Resilience: Therapeutic Work with Ambiguous Loss, W. W. Norton & Company.
- [2] 정익중·김성천·송재석(2009).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제61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3] 국립국어원(2022).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4] 경찰청(2023). “실종사건 관련 발표자료”
- [5] 보건복지부(2023). “실종자 실태관련 언론보도자료”.
- [6] 경찰청(2022).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 [7] 남재성(2015). “한국형 ‘코드 아담’ 실종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 [8] 김상호·이용혁(2008). “엠버 경보 운영에 대한 주요 쟁점과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한국공안행정학회.
- [9] 이하섭(2013). “민간조사원을 활용한 실종자 조사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치안

정책학회.

[10] 이근수·곽대경(2015). “실종추적탐을 활용한 실종자 수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3호, 한국경찰학회.

[11] 박종철·장일식(2018).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12] 최원태(2007). “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13] 정명숙(2012). “RFID/USN을 활용한 치매노인 실종자 찾기 시스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한국노인복지학회.

[14] 정익중·유정아·안은미·이민주·남성희(201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실종담당경찰관의 초점집단면접”, 비판사회정책, 제59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15] 이강문(2018).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16] 이근수(2019).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법학회.

[17] 권자영·박향경(2015). “실종아동부모가 경험한 가족의 삶”, 한국가족복지학, 제48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8] 김종우·김정우(2013). “장기실종아동을 둔 부모들의 상실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9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9] Bonny, E., Almond, L., & Woolnough, P.(2016). “Adult missing persons; Can an investigative framework be generated using behavioural them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3(3).

[20] Butorac, K., Mikšaj-Todorović, L., & Žebec, M. S.(2016). “Missing Persons in Croatia: Incidence, Characteristics and Police Performance Effectiveness”, Handbook of Missing Person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21] Fyfe, N., Parr, H., Stevenson, O., & Woolnough, P.(2015). “To the End of the World; Space, Place, and Missing Persons Investigations”,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9(3).

[22] Greene, K., & Pakes, F.(2013). “The cost of missing person investigations; Implications for current debates”,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8(1).

김 상 민 (Kim Sang Min)



- 2022년 9월~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2년 9월~현재: 한국범죄학회 행정간사
- 2022년 3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탐정학, 행정학
- E-Mail: yjy6025@naver.com

선 준 호 (Sun Jun Ho)



- 2022년 9월~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2년 9월~현재: 한국범죄학회 연구간사
- 2022년 9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탐정학 박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탐정학, 행정학
- E-Mail: tjsrudwls1@naver.com

염 건 령 (Yeom Keon Ryeong)



- 2000년 08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찰학)
- 2011년 08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박사)
- 2022년 09월~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탐정학)
- 2023년 09월~현재: 가톨릭대학교 부설 한국탐정학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행정학, 사회학, 통계
- E-Mail: kicl2001@naver.com